

2.1호

행정명령

브롱크스, 더치스, 킹즈,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몬드, 록랜드, 서퍽, 설리반, 얼스터, 웨스트체스터와 인접한 카운티에 비상 재난 선포

2021년 9월 1일 이후 계속, 열대성 저기압 아이다(Post-Tropical Depression Ida)가 브롱크스, 더치스, 킹즈,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몬드, 록랜드, 서퍽, 설리반, 얼스터, 웨스트체스터와 인접한 카운티에서 대중교통, 유틸리티 서비스, 공중 보건, 공공 안전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험 요소가 되어 뉴욕주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열대성 태풍 아이다로 폭우와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31,300건 이상의 주택 정전, 나무 쓰러짐, 지역별 홍수, 도로 폐쇄, 이동 중단, 그리고 영향받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공중 보건 및 안전에 계속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브롱크스, 더치스, 킹즈,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몬드, 록랜드, 서퍽, 설리반, 얼스터, 웨스트체스터와 인접한 카운티의 영토 내에서 2021년 9월 2일자로 뉴욕주 비상 재난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2호를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2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1년 10월 17일까지 연장하며 행정명령 2호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

또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 일자부터 2021년 10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뉴욕주 재정법(Finance Law) 제179-S항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과 뉴욕주 감사원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